등록자:이영창, 등록일시:2015.07.07 16:04, 출력자:김중학, 다운로드일시:2015.07.07 16:20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12재나10003 원상복구 등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김중학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자이아파트 114동 1202호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1. 성원.오피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63 자이아파트 101동 1702호

   대표자 조합장 정휘만

2. 성남시

   대표자 시장 이재명

3. GS건설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GS역전타워

   대표이사 허명수

피고 1, 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병욱

주 문

원고(재심원고)의 2014. 6. 8.자 피고(재심피고) 성남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신청과 2014. 6. 8.자 피고(재심피고) 성원.오피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재심피고)들(이하 '피고'라 하고, 피고 성원.오피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피고 조합'이라 한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7204호로 원상회복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1. 10. 12.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1나97609호로 항소하였는바, 2011. 5. 31.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이하 '재심대상 사건', '재심법원' 또는 '재심대상 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재심대상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후 대법원 2012다200639호로 상고하였는바, 2012. 6. 27. 위 법원으로부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원고는 2012. 11. 2. 재심대상 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원고의 2015. 5. 1.자 청구취지변경 등 신청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청 및 준재심 및 재심취지
>
> 1. 신청취지

등록자:이영창, 등록일시:2015.07.07 16:04, 출력자:김중학, 다운로드일시:2015.07.07 16:20

원고의 ① 2012. 1. 28. 문서제출명령 신청 및 ② 2012. 1. 28. 서증인부를 인용한다.

2. 준재심취지

원고의 ① 2012. 1. 28. 문서제출명령 신청 및 ② 2012. 1. 28. 서증인부의 묵시적 기각을 취소한다.

3. 재심취지

가. 이 사건의 피고 조합 소송대리인(선병욱)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인 재심사유를 판단한다.

나. 이 사건은 원고의 2012. 1. 28. 문서제출명령 신청 및 2012. 1. 28. 서증인부의 인용이 아니므로 당연한 판단의 누락이므로 판단한다.

다. 설령 판결 이유에 없는 사항인 원고의 조합원지위에 대하여 피고 성남시장의 2002. 11. 5. 조합설립인가 및 수차의 변경인가의 위법과, 조합규약 제8조 제1항인 '재건축결의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 전까지 동의한 경우'와, 제10조 제2항인 '조합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자격은 자동 상실'되는 강행규정에 관하여 판단의 누락이므로 판단한다.

라. 이 사건의 재건축이 사업계획변경승인에 적용하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동법 제44조의3 제7항 또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제4항인 위법과 그 법의 헌법 제23조의 위헌에 관하여 당연한 판단의 누락이므로 판단한다.

마. 설령 판결 이유에 없는 사항인 원고의 분양신청이 민법 제111조 제1항인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하여 그 효력이 상실된 것과 조합규약 제38조 제4, 5항인 분양계약체결을 아니하면 조합이 금전청산을 하는 것에 관하여 판단의 누락이므로 판단한다.

바. 설령 판결 이유에 없는 사항인 성남지원 2005가합4587 판결에 의하여 성남지원 2003가합3177, 성남지원 2004가합199, 성남지원 2008가합814, 성남지원 2009

가단51362 판결이 그 효력이 상실된 것과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인 5년인 재심제기기한을 도과한 것에 관하여 판단의 누락이므로 판단한다.

4. 청구취지

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① 2012. 1. 28. 문서제출명령 신청 및 ② 2012. 1. 28. 서증인부의 묵시적 기각 결정을 취소한다.

다. 2012. 5. 31.자 서울고등법원 2011나97609 판결을 변경한다.

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218-2외 2필지 지상 오피씨(OPC)아파트 제4동 제5층 제501호를 원상복구하고, 위 아파트 부지의 지번을 원상회복하라.

마. 소송비용은 제1심, 제2심, 이 사건 재심(준재심) 모두 피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바. 제라.항은 가집행할 수가 있다.

2. 원고의 문서제출명령 신청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문서제출명령 신청

원고는 2014. 6. 8. 피고 성남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신청(별지1.) 및 피고 조합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 신청(별지2.)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문서제출명령 신청'이라 한다). 원고는 당심이 이 사건 각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반드시 채택하여 대상 문서들에 대해 증거조사를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신청에 대한 당심의 판단을 구하고 있다.

나. 판단

(1) 증거채부 판단의 전제

확정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재심의 허부와 재심이 허용됨을 전제로 한 본안심리의 두 단계로 구성되는 것인바, 법원이 재심의 허부와 관련하여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심이 허용됨을 전제로 한 본안심리를 할 필요 없이 형식적 재판으로써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56. 12. 29. 선고 4289민상457 판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2다2247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즉 원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가 민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2) 원고 주장의 재심사유들

원고가 이 사건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이 사건의 피고 조합 소송대리인이었던 선병욱의 소송대리권 흠결)와 제9호의 재심사유(① 원고가 재심대상 사건에서 한 2012. 1. 28.자 문서제출명령 신청 및 2012. 1. 28.자 서증 인부에 대한 판단누락, ② 원고의 조합원지위에 대하여 피고 성남시장의 2002. 11. 5. 조합설립인가 및 수차의 변경인가의 위법과, 조합규약 제8조 제1항인 '재건축결의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 전까지 동의한 경우'와, 제10조 제2항인 '조합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자격은 자동 상실'되는 강행규정에 관한 판단누락, ③ 이 사건의 재건축이 사업계획변경승인에 적용하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동법 제44조의3 제7항 또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4항인 위법과 그 법의 헌법 제23조의 위헌에 관한 판단누락, ④ 원고의 분양신청이 민법 제111조 제1항인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하여 그 효력이 상실된 것과 조합규약 제38조 제4~5항인 분양계약체결을 아니하면 조합이 금전청산을 하는 것에 관한 판단누락, ⑤ 성남지원 2005가합4587 판결에 의하여 성남지원 2003가합3177, 성남지원 2004가합199, 성남지원 2008가

합814, 성남지원 2009가단51362 판결이 그 효력이 상실된 것과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인 5년인 재심제기기한을 도과한 것에 관하여 판단누락)를 들어 재심청구를 하고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는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소송대리권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민사소송법이 규정한 취지는 원래 그러한 대표권의 흠결이 있는 당사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이를 재심사유로 삼기 위하여는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란 위와 같은 대리권흠결 이외의 사유로도 종전의 판결이 종국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이 되게 변경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0사5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재심대상 사건에서 피고 조합이 선병욱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지 않았음에도 선병욱이 피고 조합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재심청구에서 원고의 소송대리권 흠결 주장 이외의 사유로도 재심대상 판결이 종국적으로 원고의 이익이 되게 변경될 수 있음을 인정할 증거나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재심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4)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나, 같은 항 단서는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위 재심사유를 제한하고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판결정본의 송달에 의하여 판단누락의 재심사유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557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재심대상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만약 재심대상 판결에 판단누락이 있었다면 원고는 그 무렵 그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재심대상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재심대상 판결에 같은 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는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재심사유들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 소결론

민사소송법 제290조는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바, 재심청구 사건에 있어서 재심청구가 그 요건을 갖춘 적법·유효한 것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본안심리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재심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하므로, 이 경우 재심당사자가 본안심리에 관하여 신청한 증거들은 그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가 적법·유효한 것임에 관하여 주장, 입증이 부족함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은바, 원고가 재심대상 사건의 본안심리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문서제출명령 신청의 대상 문서들에 대한 제출명령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없다고 하겠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문서제출명령 신청은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015. 7. 7.

재판장 판사 신 광 렬

판사 이 정 환

판사 이 영 창

등록자:이영창, 등록일시:2015.07.07 16:04, 출력자:김중학, 다운로드일시:2015.07.07 16:20

별지1.

문서제출명령 및 이의신청서

사건번호 : 2012재나10003 원상복구 등 제1민사부

준재심원고(본소원고) : 김중학

준재심피고(본소피고) : 성원오피씨재건축정비조합 외 2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290조 및 제343조인 문서제출명령 및 이에 대하여 제138조인 이의를 신청합니다.

신 청 문 서

1. 문서의 표시

1) 2003. 6. 30. 사업계획승인 때에 재건축사업안건, 동의서, 보상문서.

2) 2003. 11. 26., 2007. 6. 21., 6. 25., 7. 20. 각 사업계획변경승인 때에 재건축사업안건, 동의서, 보상문서.

3) 2002. 11. 5. 조합설립인가 때에 재건축사업안건, 동의서, 원고의 동의서

4) 2003. 3. 18., 4. 18., 5. 27., 7. 18., 8. 22., 2004. 1. 10., 4. 14., 2005. 2. 1., 7. 11., 12. 5., 2006. 5. 27., 2007. 1. 30., 6. 15. 각 조합설립변경인가 때에 재건축사업안건, 동의서, 원고의 동의서

2. 문서의 취지

1) 2003. 6. 30. 사업계획승인 때에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3항을 정한 재건축사업안건,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7항의 결의여부를 판단한 동의서 또는 동의현황, 동의를 안 한 자에 대하여 보상한 근거.

2) 2003. 11. 26., 2007. 6. 21., 6. 25., 7. 20. 각 사업계획변경승인 때에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3항을 정한 재건축사업안건,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7항의 결의여부를 판단한 동의서 또는 동의현황,

등록자:이영창, 등록일시:2015.07.07 16:04, 출력자:김중학, 다운로드일시:2015.07.07 16:20

동의를 안 한 자에 대하여 보상한 근거.

3) 2002. 11. 5. 조합설립인가 때에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3항을 정한 재건축사업안건,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7항의 결의여부를 판단한 동의서 또는 동의현황, 원고가 동의한 동의서

4) 2003. 3. 18., 4. 18., 5. 27., 7. 18., 8. 22., 2004. 1. 10., 4. 14., 2005. 2. 1., 7. 11., 12. 5., 2006. 5. 27., 2007. 1. 30., 6. 15. 각 조합설립변경인가 때에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3항을 정한 재건축사업안건,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7항의 결의여부를 판단한 동의서 또는 동의현황, 원고가 동의한 동의서

3. 증명할 사실

1) 2003. 6. 30. 사업계획승인 때에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3항을 정한 재건축사업안건이 없어 위법승인인 사실, 결의가 되지 않았기에 위법승인인 사실, 동의를 안 한 자에 대하여 보상이 없기에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헌인 사실 등

2) 2003. 11. 26., 2007. 6. 21., 6. 25., 7. 20. 각 사업계획변경승인 때에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3항을 정한 재건축사업안건이 없어 위법승인인 사실, 결의가 되지 않았기에 위법승인인 사실, 동의를 안 한 자에 대하여 보상이 없기에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헌인 사실 등

3) 2002. 11. 5. 조합설립인가 때에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3항을 정한 재건축사업안건이 없어 위법인가인 사실, 결의가 되지 않았기에 위법인가인 사실, 원고의 동의가 없기에 조합원 지위가 원인무효인 사실(피고 조합이 동의로 위조한 사실)

4) 2003. 3. 18., 4. 18., 5. 27., 7. 18., 8. 22., 2004. 1. 10., 4. 14., 2005. 2. 1., 7. 11., 12. 5., 2006. 5. 27., 2007. 1. 30., 6. 15. 각 조합설립변경인가 때에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3항을 정한 재

등록자:이영창, 등록일시:2015.07.07 16:04, 출력자:김중학, 다운로드일시:2015.07.07 16:20

건축사업안건이 없어 위법변경인가인 사실, 결의가 되지 않았기에 위법변경인가인 사실, 원고의 동의가 없기에 조합원 지위를 변경(박탈)하지 않아 위법변경인가인 사실 등

4. 문서를 가진 사람

피고 성남시청

5. 문서제출의무의 원인

피고 성남시청이 승인(인가)때에 첨부되어 검토하는 문서이므로,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 청 취 지

1. 피고 성남시청은 위 문서의 표시에 대한 문서를 제출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위 증명할 사실에 대하여 피고는 반증 없이 재변만 하므로, 민사소송법 1)제290조인 유일한 증거로서 2)제343조인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이때 불허는, 헌재 3)2002헌바46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하는 법원의 재량한계규정인 위헌 및 민사소송법 4)제202조인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대법원 5)82다

---

1) **제290조(증거신청의 채택여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343조(서증신청의 방식)** 당사자가 서증(書證)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경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단서규정에 의하면 예외적으로 주요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대법원 1984. 12. 16. 선고 53다229 판결; 1970. 11. 30. 선고 70다2218 판결 참조)...그 필요성 여부의 판단은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재적 한계가 있다. 즉, 그 증거가 소송의 쟁점과 무관하거나 쟁점판단에 무가치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그 사실의 존부가 소송결과에 영향이 없는 경우, 법원이 이미 충분한 심증을 얻고 있는 경우, 동일 사실에 대하여 거듭 증거가 신청된 경우, 경험칙 등에 의하여 법원이 이미 알고 있는 경우 등은 증거조사가 불필요한 예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헌재 2004. 9. 23. 2002헌바46)

4)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5) 가. 민사소송법 제187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 법률적인 증거규칙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할

등록자:이영창, 등록일시:2015.07.07 16:04, 출력자:김중학, 다운로드일시:2015.07.07 16:20

카317 판결의 위배입니다.

2. 이제 원고의 변론은 정지로서 동법 6)제279조 제1항은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되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므로 민사소송법 7)제138조인 이의신청으로 결정을 구하며, 법원의 기각결정에는 항고 또는 추후 준재심을 합니다.

2014. 6. 8.

원고 김 중 학

서울고등법원 귀중

뿐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있는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같은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82.08.24. 선고 82다카317 판결[손해배상등])

6) **제279조(변론준비절차의 실시)** ① 변론준비절차에서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야 한다.

7) **제138조(합의부에 의한 감독)** 당사자가 변론의 지휘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 또는 제136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른 재판장이나 합의부원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판한다.

등록자:이영창, 등록일시:2015.07.07 16:04, 출력자:김중학, 다운로드일시:2015.07.07 16:20

별지2.

문서제출명령 및 이의신청서(2014. 3. 7.자 교체용)

사건번호 : 2012재나10003 원상복구 등 제1민사부

준재심원고(본소원고) : 김중학

준재심피고(본소피고) : 성원오피씨재건축정비조합 외 2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290조 및 제343조인 문서제출명령 및 이에 대하여 제138조인 이의를 신청합니다.

신 청 문 서

1. 문서의 표시

1) 2002. 9. 28.경 의결한 재건축사업안건, 원고의 동의서, 전체의 동의서, 매도청구근거

2) 2003. 3. 8.경 의결한 재건축사업안건, 원고의 동의서, 전체의 동의서, 매도청구근거

3) 2003. 8. 24.경 의결한 재건축사업안건, 원고의 동의서, 전체의 동의서, 매도청구근거

4) 2004. 4. 24.경 의결한 재건축사업안건, 원고의 동의서, 전체의 동의서, 매도청구근거

2. 문서의 취지

1) 위 각 일자별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3항을 정한 재건축사업안건, 원고가 그 안건에 동의한 동의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7항이 결의여부를 확인한 동의서 또는 동의현황, 찬성을 안 한자에 대하여 매도를 청구한 근거

등록자:이영창, 등록일시:2015.07.07 16:04, 출력자:김중학, 다운로드일시:2015.07.07 16:20

3. 증명할 사실

1) 위 각 일자별 개건축사업안건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3항에 위반인 사실, 원고가 그 안건에 동의를 안 한 사실,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7항인 결의된 것이 아닌 사실, 동의를 안 한 자에 대하여 보상이 없기에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헌인 사실 등

4. 문서를 가진 사람

피고 성원오피씨재건축정비조합

5. 문서제출의무의 원인

피고 조합의 작성 문서이므로,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 청 취 지

1. 피고 성원오피씨재건축정비조합은 위 문서의 표시에 대한 문서를 제출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위 증명할 사실에 대하여 피고는 반증 없이 궤변만 하므로, 민사소송법 1)제290조인 유일한 증거로서 2)제343조인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이때 불허는, 현재 3)2002헌바46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하는 법원의 재

1) **제290조(증거신청의 채택여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343조(사증신청의 방식)** 당사자가 서증(書證)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단서규정에 의하면 예외적으로 주요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대법원 1954. 12. 16. 선고 53다220 판결; 1970. 11. 30. 선고 70다2218 판결 참조)...그 필요성 여부의 판단은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재적 한계가 있다. 즉, 그 증거가 소송의 쟁점과 무관하거나 쟁점판단에 무가치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그 사실의 존부가 소송결과에 영향이 없는 경우, 법원이 이미 충분한 심증을 얻고 있는 경우, 동일 사실에 대하여 거듭 증거가 신청된 경우, 경험칙 등에 의하여 법원이 이미 알고 있는 경우 등은 증거조사가 불필요한 예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

등록자:이영창, 등록일시:2015.07.07 16:04, 출력자:김중학, 다운로드일시:2015.07.07 16:20

량한계규정인 위헌 및 민사소송법 4)제202조인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대법원 5)82다카317 판결의 위배입니다.

2. 이제 원고의 변론은 정지로서 동법 6)제279조 제1항은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되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므로 민사소송법 7)제138조인 이의신청으로 결정을 구하며, 법원의 기각결정에는 항고 또는 추후 준재심을 합니다.

2014. 6. 8.

원고 김 중 학

서울고등법원 귀중

다. (헌재 2004. 9. 23. 2002헌바46;

4)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5) 가. 민사소송법 제187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 법률적인 증거규칙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있는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같은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82.08.24. 선고 82다카317 판결[손해배상등])

6) **제279조(변론준비절차의 실시)** ① 변론준비절차에서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야 한다.

7) **제138조(합의부에 의한 감독)** 당사자가 변론의 지휘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 또는 제136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른 재판장이나 합의부원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판한다.

등록자:이영창, 등록일시:2015.07.07 16:04, 출력자:김중학, 다운로드일시:2015.07.07 16:20

정본입니다.

2015. 7. 7.

서울고등법원

법원사무관 이영표 (인)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